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35

발의연월일: 2021. 5. 28.

발 의 자:정태호·박광온·박상혁

오영환 · 오영훈 · 강훈식

한병도 · 홍익표 · 고영인

김정호 · 김교흥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와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신산업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이 코스닥상장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 구간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일반연구·인력개발 비 세액공제율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여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에서 코스닥상장요건을 삭제하여 신성 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2) 중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가)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목 3) 중 "100분의 8"을 "100분의 1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 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	세액공제) ①
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	
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발생한	<u>2024년 12월 31일</u>
해당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해	
서만 적용한다.	<u>,</u>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	1
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	
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	
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	
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생략)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 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 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 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 2. (생략)
-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

가
1) (현행과 같음)
2)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나
<u>중견기업</u>
2. (현행과 같음)
3

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 · 인력개발비 (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 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 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가 해당 과 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 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생 략)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 (생략)
 -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가. (현행과 같음) 나
 가. (현행과 같음) 나
 가. (현행과 같음) 나
 가. (현행과 같음) 나
 가. (현행과 같음) 나

0}1	니하	게	된	경우	-:	다	<u> </u>
의	구뷴	- 에	따흔	三日] 율		
가) き	호호	2	중소	:기	업	케
	해딩) 하기	(]	Ò	나니	하;	게
	된	과서	에 연	도의]	개/	시
	일투	브터	31	년	0]	내	케
	끝니	누는	과	네연	도	까기	ः]:
	100	분의	15) -			
나) 가)의	기긴	<u>}</u> o]후	부١	터
	2년	0	내	케	끝	나	느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u>100분</u> <u>의 10</u>
-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 <u>100분의</u> <u>8</u>
- 4) (생략)
- ② ~ ⑥ (생 략)

7})
100분의 20
나)
100분
<u>의 15</u>
3)
<u>100분</u>
<u>의 13</u>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